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
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방사선 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(업무의 위탁)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추가(안 제13조제1항)

-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,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, 검정 체제 마련, 정보 관리·유통 관련 업무,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(안 제13조제1항제1호~제5호 신설)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(안 제13조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
2. 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
3. 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검정 체제의 마련에 관한 업무
4.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·유통에 관한 업무
5. 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
6.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
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업무의 위탁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<u>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	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<u>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</u> <u>2. 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</u> <u>3. 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검정 체제의 마련에 관한 업무</u> <u>4.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·유통에 관한 업무</u> <u>5. 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</u> <u>6.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</u>
<u><신 설></u>	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u>